

전자업계의 관세법 개정 건의(안) 주요내용

자료 : 본회 기획과

○ 반도체제조용 원재료에 대한 적용세율 인하
근거규정 : 법 제7조
개정내용 : 세율 인하(8~9% → 0%)

○ 컴퓨터 중앙처리장치(CPU) 및 주기판 세번
별도 제정
근거규정 : 법 제7조
개정내용 : 중앙처리장치(CPU) 8542 11 9090
→ 8473 30 2000

주기판 8471 20 9000
8471 93 1000
8473 30 9000
8471 91 9000
8471 93 9000

→ 8473 30 3000

○ 첨단기술관련 산업용기기 감면율 상향조정 및
적용기간 연장 등
근거규정 : 법 제28조, 재무부고시 92-9호, 재
무부령 1895호

편집자주 : 본고는 관세법령 개정과 관련
하여 전회원사의 의견을 수렴·조사한 결과
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(안) 중 주요내용
을 요약한 것이며 그 상세한 내용은 기획
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.

개정내용 : 감면율 40% → 60%
적용기간 : '93. 12. 31 → '96. 12. 31
적용대상 : • 관련기기 → 부분품 포함
• 하자보수용, 기술도입대가 등 포함

○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율 상향조정, 적용기
간 연장 및 부분품 포함
근거규정 : 법 제28조의6, 시행규칙 제19조, 20
조, 21조

개정내용 : 감면율 80% → 전액
적용기간 : '94. 12. 31 → '96. 12. 31

○ 학술 연구용품, 감면기간 확대 및 부분품 포함
근거규정 : 법 제28조의 5
개정내용 : 감면기간 '94. 12. 31 → 폐지
감면대상 관련기기 → 부분품 포함

○ 위약물품 관세환급 준비기간 연장
근거규정 : 법 제35조
개정내용 :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→ 수입면허
일로부터 1년 6월

○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절차 등 완화
근거규정 : 법 제98조의 2

국내 이동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애로 건의

1. 정 부

1) 이동통신산업 정책방향 재정립

- 해당기관 : 상공부, 체신부
- 정책의 기본방향 : 통신서비스와 통신제조업 간의 유기적조화
 - 서비스 방식, 시기 등이 제조업계의 개발, 투자계획과 연계
 - 통신기기 제조업계는 관련부품·소재 업계와 연계
- ※ 수입액 : 단말기 ('92) : 484억 원, 시스템 ('91년) : 882억 원

2) 원산지 확인제도 운용 강화

현 행 : 해당기관 : 관세청

- 관련법규 : 대외 무역관리 규정 제3-7-3 조(수입물품 원산지 표시)
- 휴대용무선전화기는 '92. 4. 1부터 부가가치(35% 이상)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으로 추가 되었고 '91년 10월 28일 수입선다변화 실시운용 이후에도 오끼, 파나소닉 등 일본 브랜드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.
- 휴대용무선전화기가 원산지 확인 물품으로 추가되기 전까지는 Assembled in U.S.A로

편집자주 : 본고는 통신산업협의회에서 지난 3월 15일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세계적인 시장잠재력과 수출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망산업임을 감안 국내 이동통신의 가격 및 기술적인 경쟁기반이 취약하고, 선진국의 특허공세 등 당면 애로사항을 상공자원부 장관, 체신부 장관, 관세청장, 한국이동통신(주)에 건의한 내용이다.

표기되었다가, 이후에는 Made in U.S.A로 표기되어 시장에 판매

건 의 : 휴대용 무선전화기(일본 브랜드 제품)의 원산지 증명확인서 부가가치(35% 이상) 기준을 철저히 확인이 요망되며, 미국, 유럽 제품의 경우에도 일본의 핵심부품(Duplicer Filter, Power Module 등)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제도 활용이 요망된다.

3) 제조업계의 유지보수체제 확립을 위한 형식승인제도 강화

현 행 : 해당기관 : 체신부

현재 이동통신 제품의 불량 및 고장시 각 대리점에서 이동통신(주)가 본사(서울)에 와서 고장, 수리를 받고 있고, 제품상의 표기上有 수입국의 언어가 그대로 상용되어 판매되고 있다.

문제점 : 전국적으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고장 및 불량시 대부분 서울의 이동통신(주) 본사에서 보수함에 따라 수리시간 지연 등 여러가지 불편함이 따르고 있고, 제품의 표기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, 숙달될 때 까지 수요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.

건 의 : 형식승인 신청서류에 전국 주요도시에 해당사 제품에 대한 직영 유지보수 조직 및 운영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심사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유지보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제조 및 수입업자는 승인불허함이 바람직하다.

- 최소 유지보수망 지역 : 서울, 경기(3), 강원

(1), 부산, 경남(2), 대구, 경북(2), 대전, 충·남북(2), 광주, 전·남북(2), 제주(1)
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칙상에 키패드 및 표시장치의 한글화를 단계적 추진해야 한다.

- 1단계 : 키패드의 한글표준화
- 2단계 : LCD(표시장치)의 한글표준화

4) 이동통신기기의 수입선다변화 품목 개선

현 행 : 해당기관 : 상공부

현재 차량 및 휴대용 무선전화기가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, 무선호출기는 자유화 품목이다.

문제점 : 차량용 무선전화기의 수요가 극히 부진함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품목 지정은 효과가 별로 없다.

- '92년도 가입수(KMTC)
- 휴대용 : 93,670대(89%)
- 차량용 : 23,670대(11%)

무선호출기의 경우 '92년 전체 수요인 617,000대 중에서 일체를 수입 판매하는 남성 Crown, 한서 Panasonic, 한진 Casio의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34천대(22%)로, 국내 3개사 금성, 삼성, 현대의 119천대(19%)를 상회하고 있다.

'92년도 일제 수입금액이 약 130억원(출고가 기준)에 달하고, 최근의 판매추이(성장도)로 보아 '93년도에는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바, 대일 무역 역조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건 의 : 차량무선전화기를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하는 대신, 무선호출기를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추가 요망된다.

5)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개발 촉진

현 행 : 해당기관 : 체신부

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(CDMA방식)의 계약이 관련 연구소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산업계에 어려움 가중

구 분	금액	조 달	방 법	비 고
○ 계약금 (ERTI+퀄컴사)	1,695만 \$	○ 정부출연금 ○ 업계분담 - 교환+기지국 : 89억원 - 단말기 : 26억4천5백만원		기 술 사용료
○ 업계분담금 (업계+퀄컴사)		내 수 용	내수+수출용	
계		600백만 \$	1,050만 \$	
교환+기지국		350만 \$	650만 \$	
단 말 기		250만 \$	400만 \$	
○ 경상기술료	순매출액의 6%			

건 의 : CDMA방식 기술도입을 위한 3차 협약전에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출된 결과가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협조 요청된다.

6) 이동통신단말기 공동개발 및 지원

구 分	TDMA방식 단말기 (수출용)	한국형아나로그형 단말기(내수용)
해 당 기 관	상공부	이동통신(주)
개 발 방 법	연구소+산업계	수요기관+산업계
개발대상제품	200g 이하	200g 이하 - 한국형 고유사양 명기등
개 발 기 간	'94년까지	'94년까지
소 요 자 금	45억원	25억원
자금조달방법	정책자금+산업계조달	수요기관 : 50%, 업계 : 50%
특 기 사 항	특허 회피기술개발 등	수요기관 우선구매

7)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심사시 국산설비 사용에 대한 가산항목 강화요망

2. 수요기관

1) 이동통신 가입 설비비의 현실화

현 행 : 현재 한국이동통신(주)에서는 이동통신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설비비, 장치비, 허가료 등을 포함하여 휴대전화기 732,000원, 차량겸용의 경우 750,000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데 이중 설비비가 65만원으로 등록금액의 89%을 차지하고 있고 이동전화가입해제시 가입자에게 반환

문제점 : 수요창출을 저해하고 있으며, 일본에서는 NTT(국제전신전화공사)의 경우 보증금 10만엔을 내지만 2년후 되돌려주고 있고 IDO(일본이동통신)의 경우는 전혀 보증금이 없다.

건 의 : 동 설비비 65만원을 50% 정도 인하 혹은 채권화하여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이 바람직하다.

2) 이동전화 가입 구비서류 간소화

- 해당기관 : 한국이동통신(주)

현 행	개 선
○ 신원증명서 1통	(삭 제)
○ 단말기 판매 확인서 또는 기기성적서	(삭 제)
○ 단말기(전화기)	좌 동
○ 차량등록증	좌 동

3) 이동전화 시설 설치 계획 예시

현 행 : 해당기관 : 한국이동통신(주)

현재 이동통신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예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, 다만 지역 개통시 기만 2~3개월 전에 예고하고 있다.

문제점 : 업계가 시설용량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통지역을 대비하여 생산함에 따라 불용자재 발생이 빈번하다.

건 의 : 반기별 이동통신 시설용량 등을 정확히 예시하는 것이 요망된다.



전자의료기기 검사 관련제도 개선건의

1. 의료기기 시험 검사

가. 현행

○ 관련근거 : 약사법 시행규칙 35조

(제조업자의 준수사항) 5호

○ 검사기관 : 생산기술연구원, 국립의료원
(보사부위임)

○ 검사품목 : 진단기기 등 91개 의료용구류
(품목 : 260개)

○ 검사방법

최초검사(표본검사)	전 수 검 사
수술대 및 소독기 등	초음파진단기, X선
175개 품목	장치 등 85개 품목

나. 문제점

전수검사 품목이 과다하고 검사기관(생기원 등)의 검사요원 부족(1개기관 : 4명~5명)으로 인한 검사기간 지연을 초래하여 제조업체의 영업활동 저해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, 최근 검사합격률이 거의 100%에 이르고 있고 (협의회 업체의 경우) 또한 국제안전규격(UL, CSA) 획득이 증가하는 등 품질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.

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안전규격(표본검사) 합격후 자율적 판매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

편집자주 : 본고는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에서 지난 3월 11일 전자의료기기 산업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병원 관계자들의 국산의료기기의 외면, 기술개발인력 및 자금부족, 검사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내용이다.

고 있다(단, 수술기, 이식장기와 같은 안정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실시).

구 분	독 일	프랑스	일 본
승인기관	노동사회성	보건성	보건후생성
검사기관	TUV(기술검사협회) 또는 VDE(독일 기술자 협회)	GLEM/ LDTE	JMI (기계금속 검사협회)
검사규격	TUV, VDE 규격	NF-074	JIS
검사방법	대부분 표본검사 실시 (단, 수술기 등 특별 기기는 전수검사)	좌 동	좌 동

다. 개선 전의사항

진단 및 검사기기는 전수검사에서 제외하고 최초검사(표본검사)로 시행 : 전기수술기, 이식장기 등 안전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기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규격을 적용

검사기관의 확대 : 현재 생기원, 국립의료원(의료관련기기)과, 서울대 치대, 연세대 치대(치과기기류)에서 시험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요원이 부족하여 검사기간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의 대형화로 인한 공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검사기관 확대 요망

진 단 기 기 류	검 사 기 기 류
진단용 X-선장치, 치과용 X-선 장치, 전기수술기, 레이저 진료기, 의료용흡인기, 치과용 핸드피스, 보청기 등	안전혈압계, 뇌파기, 초음파 영상 진단기, 환자감시장치, 폐기능 측정기, 태아감시장치, 심전도 검사장치, 초음파 뇌진단장치, 의료용 정온기 등

2. 의료기기 임상실험

가. 현행

○ 관련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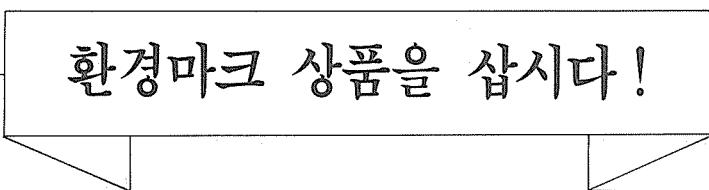
- 약사법 제26조(제조업의 허가 등) 6항(임상시험 관련) 및 제34조(의약품의 수입허가) 3항(수입자, 수입 의약품 준용사항)
-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안전성, 유효성의 심사) ①-⑥(임상시험 성적서)
- 동법 시행규칙 제25조(신약 등의 재심사) 3 항(재심사 면제)

동법에 의해 제조업 및 품목허가시 임상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성적서를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및 규격개선 된 경우에도 빈번히 요구됨에 따라 관련기업의 영업활

동 저해는 물론 각 품목에 따라 경비가 소요되어 제조업 경쟁력 상실 요인이 되고 있다. 그리고 허가기관에서 임상시험성적서 제출여부를 판단할 때 기능 및 규격 등의 변화 수준을 가름하여 제출요구 등이 이루어지는데 판단기준 등의 모호성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.

나. 개선건의

검사 및 진단기기 등은 품목 재허가에서 임상시험 성적서를 면제해 주고 반면 치료기기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기는 기존제품과의 기술차이 및 적용분야에 따라 국산 및 수입품 공히 국내인에 의한 임상시험 성적서 제출을 명문화해야 한다.



환경마크 상품을 삽시다!

- ◇ 환경마크는 저오염상품에 붙어있습니다.
- ◇ 환경마크 상품을 사주는 것은
 - ◎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.
 - ◎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길입니다.
 - ◎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길입니다.
 - ◎ 기업체는 저오염상품을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.

— 환 경 처 —